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3. 31

3. 提案理由

-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가. 상환 의무자가 안제11조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1월전까지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함(안 제11조).
- 나. 용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토록 규정함(안 제14조 제1항)
- 다. 읍.면.동장은 용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상환 만료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매년 12월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토록 규정함(안 제15조)

5. 參考事項

- '94년부터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년 200백만원~300백만원씩 융자조치하여 현재 128명에 720백만원이 융자 되어 있고, '97년부터 '94년도 분의 원금상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.

6. 檢討意見

- 이 조례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
- 융자상환금 기한 연장이나 감면등 관리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-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제도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11조에서 상환기간 만료 1월전까지 연장또는 감면 신청토록 한것은 상환기간만료에 임박하여 어떠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신청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 상환 만료 전일까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